

제 6 장 재 산 및 회 계

제30조 (운영재원)

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들의 회비, 기부금 또는 후원금, 기 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제31조 (사업연도)

본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32조 (사업계획서 제출)

① 회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5일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 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총회 개최 시 이에 대한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 본회는 제1항과 같이 총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3조 (결산서의 제출)

① 회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 본회는 제1항과 같이 총회의 의결을 얻은 당해 사업연도 수지결산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제34조 (잉여금 처분)

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경우 에 는 다 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.

제35조 (임원의 보수)

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는 지급 할 수 있다.